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01.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목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제 1 조[목적]	4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5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 6 조【보험금의 청구】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8
제 8 조[특약의 체결]	8
제 9 조【특약의 소멸】	
제 10 조【피보험자의 범위】	
제 11 조【특약의 보장개시】	10
제 12 조【특약전환시 세부규정】	10
제 13 조[특약의 무효]	10
제 14 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10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11
제 15 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11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듕	12
제 16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12
제 17 조[해약환급금]	
ᆌᅧᅁᄑᄼᆑᅒᆌᄋᆄᆘᅕᇻ	12

제 19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12
제 6 관 기타사항 등	13
제 20 조【소멸시효】	13
제 21 조【전환 전 계약 약관의 준용】	13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4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6

01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사망, 장해 또는 생존 등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 전환 전 계약: 이 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시점의 총 이자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 x 10% = 10원

워금

· 2년차 이자 = (<u>100원</u> +<u>10원</u>) x 10% = 11원

원금 1년차 이자

-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 시이율은 회사의 홈페이지(<u>www.hanalife.co.kr</u>)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시이율: 제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 액 및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공시이율 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라.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전환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거치형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다.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1)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2)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 라.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관 내 인용조문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마. 연계약해당일: 전환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연계약해당일 예시】

- · 보험계약일이 2024년 4월 1일인 계약의 연계약해당일: 2025년 4월 1일, 2026년 4월 1일, 2027년 4월 1일,
- ·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예시

최초계약일이 2024년 2월 29일인 경우, 2025년의 연계약해당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 2025년 2월 29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말일을 연계약해당일로 함

바. 월계약해당일: 전환일부터 1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월계약해당일 예시】

- · 보험계약일이 2024년 4월 1일인 계약의 월계약해당일 : 2024년 5월 1일, 2024년 6월 1일, 2024년 7월 1일, ……
- ·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예시

최초계약일이 2025년 1월 29일인 경우, 돌아오는 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 2025년 2월 29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함

4. 상품 관련 용어

- 가. 기본보험료: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전환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총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의 200% +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예시】

기본보험료 1,000만원,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100만원인 경우

- ⇒ 추가납입보험료 총납입한도 = 1.000만원 x 200% + 100만원 =2.100만원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없는 경우 : 2,100만원 납입가능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가 500만원인 경우 : 1,600만원 납입가능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연금을 지급(확정연금형)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동안 연금지급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 5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에 적용하는 이율은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 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 이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부리 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지표와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내부지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국고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 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 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피보험자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 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 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또는 같은조 제2호에서 정한 연금에 해당 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급부금임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설명]

분쟁조정신청은 전환 전 계약의 '분쟁조정신청'에 따르며,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계약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 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8 조[특약의 체결]

① 이 특약은 전환 전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전환 전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청약]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계약자는 전환을 신청할 때 연금지급개시시점 및 다음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 용	
~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연금지급 형태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제 9 조 (특약의 소멸)

- ① 이 특약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민법」제27조[약관 내 인용조문 참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⑥ 제3항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의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계산'에 따릅니다.

제 10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11 조(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 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12 조【특약전환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기준 특약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전환 전 계약 체결시 특약의 적용기초율(위험률,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사업비율)과 전환시점의 특약의 적용기초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률】

개인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질병에 걸리는 등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말합니다.

【사업비율】

보험료 중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사업비율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가입나이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제 13 조【특약의 무효】

①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설명】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라 함은 특약체결당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가입가능한 나이를 말합니다.

[예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가입가능한 나이가 20세 ~ 70세인 상품의 경우

특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9세인 경우 ⇒ 무효 특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71세인 경우 ⇒ 무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제 14 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기본보험료
 - 2. 연금지급개시나이
 - 3. 연금지급형태

- 4. 계약자
- 5. 기타 특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감액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

기본보험료를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계약자적립액(해약 환급금)및 보장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구분	내 용	
	종신연금형	10년보증, 20년보증,
연금지급	(개인연금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형태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약관 내 인용조문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감액은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에만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5 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16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 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이후에는 연금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17 조[해약환급금]

① 이 특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제 18 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에도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① 거치형의 경우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전까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으로 연 12회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한도로 하고, 전환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연계약해당일로부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일이 202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설명】

보험년도 1년 이내(계약일이 2024년 8월 15일인 경우,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에는 최대 12회에 한하여 일별 횟수 제한없이 언제든지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예시】

- 예) 기본보험료 1억원, 해약환급금 400만원인 경우
- → 최대인출 한도 적용시 해약환급금의 50%인 200만원이 최고한도이나,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400만원 200만원 = 200만원으로 300만원(기본보험료의 3%)미만이 되므로 최대 1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④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등

제 20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설명]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경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전환 전 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 연금 (개인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 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 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한 금액 - 보증기간: 10년, 20년, 100세 (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생존 연금 (제3조 제1호)	상속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차년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1년전으로 할인한금액에 대한 1년간의 이자액에서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금액(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적용) 2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기차년도 연금액 및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금액을 원금으로 매지급시점 직전 1년간의 이자액에서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금액을 차감한금액 대지급시점 직전 1년간의 이자액에서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금액 대지급시점 직전 1년간의 이자액에서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금액 대지급시점 직전 1년간의 공시이율을 적용) * 피보험자가사망시에는사망당시의계약자적립액을지급하고연금은더이상지급하지않음	
	연금 (제3조 제2호)	확정 연금형	연금지급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5년, 10년, 15년, 20년	

(주)

- 1.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 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 3.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

- 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동안 연금지급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8.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사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10.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11.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제9조 제6항 및 제17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제9조 제3항)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생존연금, 연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공시이 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공시이 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생존연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제20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4.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